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소방청장 이홍교

2022. 3.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2022.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화재현장 보존, 관계인의 출석,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재조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의 원칙, 대상 및 절차(안 제3조-제5조)

화재조사의 개시, 화재출동시의 상황파악,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및 현장보존, 화재현장조사, 화재조사의 방법(화재조사의 종류 및 범위), 화재원인 등 조사 및 분류, 화재피해조사, 자료의 보관, 화재조사 책임, 화재조사업무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운영(안 제6조-제8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화재조사관 자격기준을 규정

다.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안 제9조)

편성, 설치·운영, 합동조사단장, 합동 화재조사관, 본부요원, 합동조사단의 지원, 현장지휘자로부터의 정보인수, 화재조사결과의 대외발표, 여비·수당 등 지급, 합동조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제구역 설치(안 제10조-제11조)

현장보존, 통제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관계인등의 출석 및 질문(안 제12조)

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질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증거물 수집의 범위, 방법 및 절차(안 제13조)

증거물의 상황기록, 수집, 포장, 보관·이동, 증거물에 대한 유의사항,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 촬영 시 유의사항, 기록, 기록의 정리·보관, 기록 사본의 송부 및 관리,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절차(안 제14조-제19조)

감식, 감정 및 시험,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안 제20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시스템의 구축, 공동 구축·운영, 사용 권한 관리, 운영센터의 설치, 운영계획의 수립, 운영협의회의 구성, 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시스템을 통한 화재증명원의 교부, 화재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자료의 백업, 시스템의 보안책임, 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형법」,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중

라. 기 타 : 생략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식"이란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정"이란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과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실험 등을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화재조사의 원칙) ① 화재조사는 화재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② 화재조사는 증거물과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화재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규명해야 한다.

제4조(화재조사의 대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2. 그 밖에 사람, 동물, 물건 등에서 발생한 기타 화재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조(화재조사의 내용·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화재조사는 화재출동 중 조사, 화재현장 조사, 감식·감정 등을 통한 정밀조사, 화재조사결과 보고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의 세부적인 내용,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는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전담부서에 제7조에 따른 화재조사관을 배치해야 하며, 전담부서에는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화재조사관의 자격 기준) ① 소방관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재조사 관련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업무를 1년 이상 실시한 사람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4. 화재조사 관련 국가기관에서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5.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방법, 과목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교육훈련 등) ①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전문교육

가.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나.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

2. 다른 행정기관·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조사 이론·실습 및 화재조사 관계 법령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관련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화재합동조사단 구성·운영 등)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2. 화재로 인한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소방관서장이 화재합동조사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②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소방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화재조사관
2.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소방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축·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중에는 화재조사에 관해서 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 및 단원은 화재조사관으로 본다.

⑥ 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개요

2. 화재조사 개요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4.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분석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 또는 단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합동조사단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0조(화재현장 보존조치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화재현장 보존조치는 화재현장에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화재현장에서 보존을 할 수 없거나 추가적인 피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또는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가 해당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보존조치를 해지해야 한다.

제11조(통제구역의 설정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통제구역은 화재조사 또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설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통제구역의 범위
2. 통제구역의 설정 기간
3. 그 밖에 통제구역 설정 안내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화재조사관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나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의 통제구역 출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관계인등에 대한 출석 및 질문 등)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출석 일시와 장소

2. 출석 요구 사유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4. 제출자료

5. 그 밖에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인등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소방관서장은 관계인등이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하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시험·분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증거물을 소방관서에 보관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인 또는 증거물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는 소방관서장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증거물에 대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관서장은 수집한 증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조사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해 증거물 보관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한다.

1.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시설을 갖추었을 것

가. 증거물, 화재조사 장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

나.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보관할 수 있는 시설

다. 증거물의 감식·감정을 수행하고, 수행 과정 등을 촬영 및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처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

2. 화재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 중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가. 이공계 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화재조사 관련 자격을 취득했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화재조사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식·감정 장비, 증거물 수집 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감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전문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감정기관 지정신청 및 절차 등) ①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2.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 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화재조사 관련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4.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소방청장은 감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기관을 지정하거나 감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고의 보완 등) ① 소방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7조(감정 의뢰 등) ① 소방관서장은 과학적 조사·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정 대상, 감정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의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기관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감정기관 지정·취소) ①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감정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감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된 감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감정기관 지정을 다시 받을 수 없다.

③ 지정이 취소된 감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정기관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지도 또는 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정기관에 출입하여 감정과 관계되는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화재정보를 기록·유지 및 보관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정보의 기록·유지 및 보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감정기관 등에 화재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화재정보를 수집·관리한다.

1. 화재 원인
2. 화재피해 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관계 법령 등의 이행 및 위반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④ 소방청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소방관서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정보를 활용한 연구·분석 등을 통해 화재예방, 대응활동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1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과 관련한 연구·조사·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2조(민감정보의 처리)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명피해상황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증명원의 발급 사무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설정한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한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반행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통제 구역에 출입한 사람	법 제8조제2항	100	150	2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법 제9조제1항	100	150	2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법 제10조제1항	100	150	200

〈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연 락 처	(044) 205 - 7475